

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 ■ 계약기간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## ■ 계약목적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 1. 계약 당사자
  2. 계약기간
 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

## ■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
## ■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
3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#### ■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
#### ■ 계약해지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 2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 3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 4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#### ■ 배상책임 보험가입

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(이하 “전문인 배상책임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 한다.

#### ■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-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 1.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
  2.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
  3.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

# 2024 년 장기요양보험(방문) 급여비용 안내

[월 이용료 한도액] -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% 추가 됩니다 (단위 : 원)

| 등급  | 1 등급        | 2 등급        | 3 등급        | 4 등급        | 5 등급        | 인지등급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한도액 | 2,069,900 원 | 1,869,600 원 | 1,455,800 원 | 1,341,800 원 | 1,151,600 원 | 643,700 원 |

[장기요양 수가 안내] (단위 : 원)

| 방문요양 방문시간 | 수가       | 본인부담 (15%)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30 분      | 16,630 원 | 2,495 원    |
| 60 분      | 24,120 원 | 3,618 원    |
| 90 분      | 32,510 원 | 4,877 원    |
| 120 분     | 41,380 원 | 6,207 원    |
| 150 분     | 48,250 원 | 7,238 원    |
| 180 분     | 54,320 원 | 8,148 원    |
| 210 분     | 60,530 원 | 9,080 원    |
| 240 분     | 66,770 원 | 10,016 원   |

○ 본인부담금 비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부담율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|
|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) | 감경 6%, 9% |

## 운영규정 개요

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기관명  | 구구팔팔 재가복지센터      | 지정일자 | 2016.04.18 |
| 지정형태 | 재가장기요양기관<br>방문요양 | 대표자  | 박종순        |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집방법 |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.<br>안면 있는 주변인물, 지역사회와 친교를 통해 확보한다<br>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상책임 |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 |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목적          |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기간          |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해지          |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원인수<br>(보호자) | 보호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, 이용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. |
| 이용료           |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보험가입증명서

## INSURANCE CERTIFICATE

가입업체명 : 구구팔팔재가복지센터  
보험종목 : 기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
증권번호 : F-2024-0041874 [ 6028003727 ]  
보험기간 : 2024.02.22.00:00 부터 2025.02.22.00:00 까지  
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3, 1층(방학동)

##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임을 증명함.

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 
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 
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사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전문인배상보험 센터 [[www.seeins.co.kr](http://www.seeins.co.kr)]

전화번호 : 02 - 2246 - 8024

팩스번호 : 02 - 6008 - 1562

메일주소 : [cargoinsu@hanmail.net](mailto:cargoinsu@hanmail.net)

 **현대해상화재보험**

대표이사 조용일 · 이성재



##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(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Policy)

## ■ 기본사항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약번호 | F-2024-0041874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28003727                | 계약일자          | 2024-02-21        |
| 보험기간 | 2024.02.22.00:00 부터 2025.02.22.00:00 까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피보험자 | 계약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구팔팔재가복지센터                | 사업자번호         | 6028003727        |
|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3, 1층(방학동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3492-8116              | 010-5806-8116 | 팩스번호 02-3492-8117 |
| 총보험료 | 965,250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입방법                      | 일시납           | 납입하실보험료 965,250 원 |

## ■ 배상보장사항

## ✿ 보험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

| 순번 | 거래처명       | 목적물구분    | 산출기초단위 | 산출기초수 | 피보험자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1  | 구구팔팔재가복지센터 | 전문인-재가급여 | 전문인수   | 43    | 재직 전문인 전원 |

| 목적물 NO | 보장     |      | 화폐  | 1인당         | 1사고당        | 총보상한도액      | 자기부담금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1      | 재가급여   | 대인배상 | WON | 50,000,000  | 50,000,000  | 50,000,000  | 100,000 |
| 1      | 재가급여   | 대물배상 | WON |             | 5,000,000   | 10,000,000  | 100,000 |
| 2      | 돌봄업무   | 대인배상 | WON | 150,000,000 | 150,000,000 | -           | -       |
| 2      | 돌봄업무   | 대물배상 | WON |             | 5,000,000   | 100,000,000 | -       |
| 3      | 형사방어비용 |      | WON |             | 10,000,000  | -           | -       |

| 목적물 NO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  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3, 1층(방학동) |

## ■ 가입약관

- 기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- 보통약관
- 소급담보일자 : 보험최초가입일
- 특약및담보 -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특별약관
- 청약당시의 재직 전문인 수를 기준으로 연간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여, 보험기간 중 추가 입사한 전문인들의 업무를 보험료 추징 없이 자동 담보합니다. (또한 퇴사에 따른 환급도 없습니다.)
- 돌봄SOS,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돌봄업무 보장

## ■ 보험가입 유의사항 (공통)

- 해당계약의 최저보험료는 20,000원 입니다.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최저보험료 기준이 적용되어 환급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## ■ 예금자 보호안내
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위 내용은 예금자 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험 안내책자들을 참조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기타

-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
  - 전화 : 1332
  - 인터넷 : www.fss.or.kr
- 사고접수,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
  - 전화 : 1588-5656
  - 인터넷 : www.hi.co.kr



기업보험8부 보험대리점명 : 씨인스원(958183)  
 ☎ 02-2246-8024 FAX 02-6008-1562  
 H.P 010-2781-8024  
 콜센터 1588-5656  
 www.hi.co.kr

대한민국정부  
 인자세 100원  
 종로세무서장  
 후남승인  
 2008년 7호

자필서명

H 현대해상화재보험

대표이사 조용일 · 이성재



씨인스원(958183)  
 문서번호 : GI-09-239